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박학모

Research on preventing defense industry
corruption and strengthening its criminal
punishments

발간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비리는 해마다 거듭하여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며 국가와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능의 작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발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의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법률안들까지 제출되었습니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방산비리범죄를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법현실을 위해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인지 검토하여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단행되는 일련의 개혁방안과 입법정책을 뒷받침하고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연구책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2장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11
제1절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개념 정의	13
제2절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개관	14
1.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비리	14
2. 방위산업비리 vs “방산정책비리”?	19
제3절 주요 방위산업비리의 유형	20
1.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형태	20
2. 최근의 방위산업비리 적발 및 제재 사례	21
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	21
나.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22
다. 폭발물장비 납품비리	22
라.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	22
마.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	23
바. 소결	23
3. 방산비리합수단 수사사례로 본 방산비리	23
가.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과 역할	23
나.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 결과	24
다. 방산비리합수단 수사·기소 방산비리범죄	25

| 제3장 |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27

제1절 방산비리 예방의 중요성	29
제2절 방산비리 예방정책	30
1. 『2014 국방백서』로 본 방산비리대책	30
2.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방산비리 대책	31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32
4. 방위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35
제3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36
1. 방산비리범죄 형사소추의 한계	36
2.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의 개선	36
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38
4. 방산비리사건 재판과 무죄선고의 문제	39
제4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42

| 제4장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45

제1절 방산비리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검토	47
1. 방산비리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개관	47
가.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69, 170)	47
나.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354)	49
다. 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215)	51
라.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086)	51
2. 법률안들의 형사정책적 공통점	53
3. 법률안의 주요 논점 검토	54
가. 가중처벌의 실질적 근거로서 방위사업관련성	54
나. 구성요건화 기술로서 관련 범죄구성요건의 열거	55
다. 가중된 법정형	56
제2절 방위산업비리범죄와 “이적행위”	56
1.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개관	56

2. 이적행위의 불법성	58
3.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이적 규정의 한계	59
제3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60
1. 방산비리범죄의 표지로서 “이적” vs “이기”	60
2.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론?	61
가.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들의 법정형 가중 방식	61
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의 필요성?	63
3. “특가법·특경법시대”의 비상입법에 대한 성찰	64
4. 소결	65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73
 Abstract	 77

표 차례

〈표 2-1〉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주요 방산비리 현황	17
〈표 2-2〉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각 군별 방산비리 및 도입비리 현황	18
〈표 2-3〉 최근의 주요 방산비리 유형 개관	20
〈표 2-4〉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	21
〈표 2-5〉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22
〈표 2-6〉 폭발물장비 납품비리	22
〈표 2-7〉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	22
〈표 2-8〉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	23
〈표 2-9〉 2014/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결과 사법처리 현황(잠정)	26
〈표 3-1〉 국방부 반부패 청렴 추진단	32
〈표 3-2〉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및 구성(2016)	38
〈표 3-3〉 방산비리 주요 피고인 2016년 무죄선고 사례	39
〈표 3-4〉 황○○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 쟁점별 판결	41
〈표 4-1〉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 주요규정	48
〈표 4-2〉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주요내용	52

그림 차례

[그림 2-1] 방위사업의 주요단계	15
[그림 3-1] 조직도로 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33

국문요약

1. 2014년 11월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조사인력으로 구성된 범정부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방산비리합수단)이 공식 발족되어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1년여의 조사 및 수사 활동 끝에 비리규모 총 1조원대의 방산비리를 적발하여 사법조치가 취하여졌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방산비리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비리는 거듭하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뿐 아니라 방산비리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 방위산업비리는 전투기와 작전헬기, 함정의 도입에서부터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청탁과 특혜, 뇌물과 재취업 등 비리의 사슬이 끝없이 얹혀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발족·개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전반에 비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이러한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 효과가 전투력과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2014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방산비리=이적행위”라는 논의 구조가 지배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20대 국회에 들어와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련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균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2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을 기본법정형으로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취업금지,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단독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5. 방산비리의 적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누적된 가운데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써 이와 같은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 요청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비리범죄를 과연 형법 및 균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이적죄로 규정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법현실을 위해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며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하지만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형사처벌규정의 강화·정비라고 하는 단선적 해법으로 “마감”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비리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의 실효적인 정착을 통한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고발의 장려·포상의 강화 및 고발자 보호 등의 예방·억제대책이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7. 입법의 영역에서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흠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8. 여기서 열거되는 방산비리범죄의 유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는

전형적인 부패범죄에 속하며 경제범죄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산비리범죄는 “이적”성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이기”성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억제 및 반부패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9. 방산비리범죄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현행 형법체계에 적절한 형법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흡결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수단과 장치들이 제대로 투입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론 반부패법의 입법을 보완·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면 이는 방산비리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부패 관련 입법 일반의 문제라 할 것이다.
10. 여기에서 방산비리범죄의 차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특가법」과 「특경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11. 쿠데타적 정치상황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의문스러운 비상입법으로서 「특가법」 및 「특경법」이 입법될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법현실이 방산비리범죄의 엄단을 위해 비상입법이 정당화될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12.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접근법의 공통점은 방위산업 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실형)이 처해지도록 강제함으로써 방산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방산비리범죄라 하더라도 자칫 개별 사안에서 요청되는 정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특가법」 및 「특경법」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정치적 악용 시비와 함께 편법 양형의 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4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13.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마당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비리근절의 분명한 정책의지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방산비리범죄의 “특별한 취급과 관리”의 형사정책은 일정부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일차적 영역은 형사입법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즉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14.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문 수사역량의 제고를 통한 형사소추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양형실무에 있어서도 방산비리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뇌물, 횡령, 배임, 문서 등)에 대한 양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기준의 개정과정에서 방산비리 관련성을 해당 범죄의 양형가중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방산비리범죄대책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을 통한 억제를 지향하는 「방산비리범죄 처벌특별법」과 같은 입법조치는 방산비리대책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시법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범죄유형과 불법성 등을 검토하여, 형법과 균형법 및 그 밖의 특별형법과의 체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별범죄 구성요건의 설정과 법정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4년 11월 21일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¹⁾이 공식 발족되었다. 합동수사단은 검사 18명, 군검찰 및 군법무관 각 6명을 비롯하여 검찰·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사정기관의 총 105명으로 구성되었다. 방산비리합수단은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총 1조원대의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²⁾ 그런데 방산비리합수단의 활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방산비리 소식이 뉴스를 탔다.

2016년 3월 2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군 전력지원물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방위사업 업체와 국방부 공무원 및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연구소가 연루된 방탄복 관련 대규모 방산비리가 발생한 것이다.³⁾ 같은 날짜 연합뉴스의 시론이 개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업체와 국방부 공무원, 연구기관이 톨톨 뭉친 후안무치한 방산비리의 결정판”⁴⁾이라 할 수 있다. 방산비리의 한 전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를 압축하여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이하 ‘방산비리합수단’으로 약칭한다.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5/02000000000AKR20150715104300004.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3/02000000000AKR20160323084300001.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3/02000000000AKR20160323178400022.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8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2016 방탄복업체특혜 관련 방산비리 개요

- 국방부 2010년 11월에 28억원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하고 일선 부대에 지급하기로 결정
- 육군 소장 출신 국방부 1급 공무원 A씨는 방탄복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이라는 이름의 일반방탄복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 10월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한 후 청탁업체에 30만8천여벌의 다목적 방탄복에 대한 독점 공급권 부여(2천700억원 규모)
- 국방부 2014~2015년 해당업체와 26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3만5천200여벌의 일반방탄복 지급. 이 방탄복은 시험결과 북한이 개발한 고강도 철갑탄에 완전히 뚫리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공무원은 그 대가로 부인을 이 업체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천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납품과정을 살펴보면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 이 업체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남
-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국방부 내부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5천100만원을 챙겼고 전역 후 이 업체에 이사로 재취업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는 이 업체에 연구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고, 육군 사관학교 교수는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이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변신
-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이 업체와 계열사에는 29명의 전직 육군장교들이 재취업

이처럼 방위산업비리는 전투기와 작전헬기, 함정의 도입에서부터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청탁과 특혜, 뇌물과 재취업 등 비리의 사슬이 끊없이 얹혀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방위사업청이 개칭한 2006년 이래 원가부정 및 시험성적서 위조로 적발된 방산업체가 부지기수임을 지적하며 국방전문가 김종대 국회의원은 “방산업체 전반에 비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한다.⁵⁾

앞에서 인용한 연합시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방산비리의 악영향과 방산비리근절의 필요성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전투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와 관련한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파먹는 파렴치 행위이기도 하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방산 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결국은 국방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⁶⁾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전투력과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5) <http://2korea.hani.co.kr/324157>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 위의 2016년 3월 23일자 연합뉴스 <연합시론> “방산 비리, 언제 끝을 볼 것인가”.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도 2015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⁷⁾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균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169호)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0354호)을 발의하여,⁸⁾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재취업금지,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단독법 방산비리처벌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산비리의 적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누적된 가운데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의 요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비리범죄를 과연 형법(균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이적죄로 규정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법현실을 위해

7) <http://www.nocutnews.co.kr/news/4110378>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8) <http://news.joins.com/article/20151914>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9) 2012년 영국 투명성기구가 전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의 청렴성과 반부패 매커니즘에 대해 조사한 국방분야 반부패지수(2013년 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상위 11%에 속하였으며, 국방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입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http://news1.kr/articles/?989054>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자세한 것은 김병규,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평가의 理解와 對應”, 『국방과 기술』 제409호, 2013.3, 40쪽 이하 참조! 그러나 그 이후 드러난 일련의 방산비리들로 인해 이러한 평가의 빛이 바랬을 뿐 아니라, 2015년 발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C등급을 받아 17개국 가운데 6위에 그쳤다.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GI)는 국방 기관의 부패 위험 수준을 측정하여 각 국가에 A(가장 좋음)부터 F(가장 나쁨)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ce & Security,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2015, 4쪽 참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한국투명성기구, “국방선진국의 획득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제도 연구”, 2015, 146쪽 이하 참조!

10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¹⁰⁾은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및 요청과 관련하여 그 전제가 되는 방산비리 범죄의 발생 현황 및 유형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관적으로 살펴본 후 방산비리에 대한 형사제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 감사원이 “40여 년간 유지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방산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켜 독·과점에 따른 방산비리를 예방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개관은 신치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계간 감사』, 2015 봄호, 14쪽 이하 참조!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제2장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제1절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개념 정의

‘방산비리’로 약칭되는 ‘방위산업비리’는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방위산업을 포괄하는 영역이 국방 분야이고, 따라서 방산비리보다 넓은 의미로는 ‘국방비리’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국방 분야 비리유형을 발생분야에 따라 분류하면, 우선 정부조직상 소관분야에 따라 국방 분야를 ① 국방부, ② 방위사업청 및 ③ 병무청 소관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청 소관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부패범죄사안도 많기 때문에 소관 분야보다는 업무영역에 따라 ① 방위력개선사업 업무(무기체계 획득, 방위산업 육성 등)와 ② 군 운영 업무(군인사, 부대운영 등) 및 ③ 병무(병무청)로 대별하고,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를 방산비리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¹⁾

11)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박영욱 외, 『국방분야 부패 발생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10쪽 이하를 참조할 것!

제2절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개관

1.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비리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영역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법」¹²⁾ 제3조 제1호는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방위사업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強軍)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은 보통 패키지로 구성되는 장기지속사업의 특성을 지니며, 고액예산이 소요되는 고가성 사업이면서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무기체계선택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상존하는 사업이고, 특히 첨단무기체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해외구매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¹⁴⁾

12) 법률 제14182호, 2016.5.29.

13) 그 밖에 군수품,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방위산업, 방위산업물자,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한 개념규정도 이 조항을 참조할 것!

14) 박영욱 외, 앞의 보고서, 2011, 28쪽 이하 참조.

[그림 2-1] 방위사업의 주요단계¹⁵⁾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은 구매자인 정부에 적지 않은 위험요인인데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국방 분야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분야인 만큼 부패요인도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의 개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족되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그림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업무프로세스를 도표화한 것이다.

15) 박영욱 외, 앞의 보고서, 2011, 32쪽.

16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1990년대 이전의 군장성 출신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국방비리사건들은 객관적인 사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를 일단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국방비리¹⁶⁾, 그 가운데 획득사업 중심의 방산비리를 살펴보면 거의 매년 방산비리가 이슈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1990-2010 이슈화된 주요 방산비리사건

- 1993년 율곡비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 1993년 70만달러 국제무기도입 사기사건
- 1994년 상무대 이전사업 공사비리사건
- 1995년 노·전 두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율곡비리)
- 1995년 방위산업진흥회 전 국방장관 등 뇌물수수사건
- 1996년 이○○ 전 국방장관의 린다 김 기밀유출사건
- 1999년 국방부 과자금 21억 의혹사건
- 2001년 육군 '지휘자동화사업'(C4I) 금품수수 비리사건
- 2003년 이○○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과 군납업자 간 뇌물수수사건, 천○○의원 군납비리 의혹 사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 기관장 연루 군납비리사건
- 2004년 사용연한 도과 불량낙하산 재가공 납품비리사건, 군납업체에 관리차원 수천만원~억대 금품수수사건
- 2005년 해군 작전기지 공사 관련 뇌물수수사건
- 2006년 잠수함용 축전지 방산업체 원가과다계상 납품비리사건
- 2007년 방산물자 납품관련 국방산하기관 관계자 역대 금품수수사건
-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사건

1990년대 ‘국방획득사업’은 대형 무기중개상에 의해 주도되며 ‘리베이트’를 고리로 한 “권력형비리”가 주로 발생하였다면, 방위사업청에 의해 방위력개선사업이 추진된 이후부터는 방산비리의 양상이 “권한형비리”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래의 표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주요 방산비리 현황”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발생한 주요 방산비리사건 가운데 일반인에 의한 방산비리를 종합한 것이다.¹⁷⁾

16) 박영욱 외, 앞의 보고서, 2011, 30쪽 이하 참조.

17) 박영욱 외, 앞의 보고서, 2011, 30쪽 이하.

〈표 2-1〉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주요 방산비리 현황

대상사업	업체명	주요내용	처리현황 등 (2011년 기준)
대대급 마일즈장비	로우테크놀로지	수입단가 및 국산환율 조작	
항만 경비정	강남	단가 및 원가조작	부정당제재 6개월 5,300만원 환수
휴대용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HKC	원가 부풀리기	부정당제재 3개월 9.95억 환수
탄약류 날개결합체	알코아 코리아	원가 부풀리기	부정당제재 3개월 5.29억 환수
지함동류	수원지관산업	원가 부풀리기	부정당제재 3개월 3.19억 환수
케이블 조립체	연합정밀	원가 부풀리기 등	35.8억 납입고지
해군 고속정 발전기	두산 인프라코어	세금계산서 조작	부정당제재 6개월 7.8억원 환수
K-9 자주포서보실린더	한국 무그	세금계산서 위조 및 수입 면장 변조	부당이익 + 가산금 42억
M/W 통신장비, 비호사업 등	LIG넥스원	성능미달 장비납품 및 원가조작 의혹 등	일부 의혹 해소 업체 관련사항 불명확
KDX-n 대공레이더	RAYTHEON	고가 및 증고품 납품 의혹	의혹 해소
한국형 전투기	SAAB사 에이전트	개발사업 군사기밀 유출	구속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일광공영	개발사업 군사기밀 유출	제재방안 마련
잠수함사업	독일HDW 중개상	국방중기계획 군사기밀 유출	구속
해안경비체계	안보경영연구원	중기국방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구속 및 집행유예
사단급 무인전투기 개발사업	대한항공	개발사업 군사기밀 유출	압수수색 수사
오리온 사격통제장치	코리아일레콤	세금계산서 위조 및 수입면장 변조	부당이익 4.6억
기상관측라디오존데	진양공업	허위원가 자료	부당이익 4.84억
군 급식 (햄페티 등)	20개 업체	납품비리 의혹	부당이익 8.74억
위성통신	STX, 더블웨이브, 뉴텍하네스	원가 부풀리기 의혹	298억 납입고지

18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가장 최근인 2016년 9월 김동철 의원실에서 2016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사청이 개청 10년 만에 온갖 비리로 인해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방산비리 및 도입비리의 규모는 육·해·공군을 합하면 총 1조1,522억원에 달한다.¹⁸⁾

〈표 2-2〉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각 군별 방산비리 및 도입비리 현황 (2016.9. 현재)

구분	사건내용	비리규모
육군	특전사 다기능 방탄복 납품 비리 (6명 기소/3명 구속)	13억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3명 구속기소)	32억
	군 피복류(야전상의)납품 비리 (2명 구속기소)	18억
해군	통영함 · 소해함 납품 비리 (15명 기소 / 14명 구속)	669억
	고속함 · 호위함 사업 비리 (4명 기소 / 1명 구속)	805억
	정보함 사업 비리 (3명 기소 / 1명 구속)	230억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2명 등 8명 구속기소)	5,890억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4명 기소 / 2명 구속)	1,475억
	무기중개업체 고문의 해군 상대 로비 (전 작전사령관 구속기소)	1.7억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편취(10명 기소/9명 구속)	1,101억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6명 구속기소)	243억
	기무사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3명 기소/ 2명 구속)	0.2억
	KF-16 성능개량 사업 (2명 기소)	1,044억
합 계		1조1,522억

김동철 의원실의 지적과 같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단,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수사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감사 및 수사를 한 결과 온갖 양태의 방산비리를 적발하고 사법처리를 의뢰된 상황에서도 2016년에도 방산비리가 적발되어 방산비리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18) 김동철 의원실, 2016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년 9월 29일,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56685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19) 앞의 김동철 의원실, 2016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참조!

2. 방위산업비리 vs “방산정책비리”?

한편 국방연구전문가 출신 김종대 국회의원은 역설적으로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본질을 은폐하는 현혹적인 용어의 마술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²⁰⁾ 그리고 ‘방산비리’라고 하면 “하급 실무자나 일부 예비역 장교, 또는 업체”의 비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고, 심지어 이 표현은 무기거래를 왜곡시키는 훨씬 “고차원적인 무기거래 로비를 누락”시킨다고 본다. 예컨대 “북한의 특정한 위협을 부풀려 특정 무기체계 도입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는데 정치권력과 예비역들이 가담하는 행태”를 방산비리라는 표현이 포섭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껏해야 특정장비나 구성품 가격을 조작하는 ‘최종비리’로서의 ‘방산비리’는 사실 깃털에 불과하고 그 전단계의 특정무기체계의 도입을 좌지우지하는 정책결정단계의 ‘최초비리’가 몸통인데 ‘방산비리’는 이 몸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정책 자체의 잘못을 묻지 않고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만 물으려하면서 “이적행위”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도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본다.²²⁾

이는 방위산업비리로서 방산비리가 미시적 차원의 문제라면, 무기체계에 대한 정책 결정 및 무기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위정책비리로서 거시적 차원의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관련한 비리적 요소에는 국회에 의한 정치적 책임추궁과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방산비리’로 범위를 제한하여 이에 대한 형법적 통제 및 억제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 같은 분석으로는 정옥식, “방위산업 비리, 깃털이 아닌 몸통을 봐야 한다”, 『황해문화』, 2015, 196쪽 이하 및 한국투명성기구, “국방선진국의 획득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제도 연구”, 2015, 142쪽 이하 참조!

21) 정옥식, 앞의 논문, 198쪽은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국내 방산 비리와는 달리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며 주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무기도입비리로서 방산정책비리는) 정책과 정치가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한다.

22) <http://2korea.hani.co.kr/32415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0460911>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제3절 주요 방위산업비리의 유형

1.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형태

방위산업비리는 앞에서 살펴본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방위산업비리의 발생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①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도 여전히 ‘전문성 부재’, 그리고 ② 예비역의 개입으로 인한 전관예우로 요약된다.

전문성 부재는 방위사업 담당자 개인들의 전문성 부족뿐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예비역은 국방분야(현역)와 민간분야(기업)사이의 연결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의 측면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보다는 전관예우를 기반으로 한 유착으로 인한 방산비리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²³⁾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방산비리의 주요 형태는 ① 시험성적서 위조, ② 부품단가 부풀리기, ③ 불량부품 납품, ④ 금품수수편의제공, ⑤ 횡령 등으로 이를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²⁴⁾

〈표 2-3〉 최근의 주요 방산비리 유형 개관

시기	업체	규모(십억원)	내용
2007-14	국방기술품질원		군납품업체 241개가 2,749건의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2008	STX그룹	0.77	STX그룹 계열사에 유도탄 고속함 사업 편의 제공
2009	삼성테크윈, 한국무그	0.01	한국무그가 K-9자주포 핵심부품 단가 부풀려 납품
2010	이오시스템	3.2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 통과 위해 소총 조작
2011	하켄고	66.9	소해함과 통영함 부품 입찰 참여 위해 뇌물 제공
2011	15개 방산비리업체		군납 비리부정 업체 입찰참여제한 제재
2011-12	삼양컨텍	1.3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불량방탄복 2,062벌 납품
2012	일광공영, 하벨산, SK C&C	110.1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에 장착된 영상분석 프로그램 불법복제
2012-14	LIG넥스원	1.1	현군 납품과정에서 하자 장비 납품

23) 박영욱 외, 앞의 보고서, 2011, 35쪽 이하는 각 단계의 “비리 개연성”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24) 한국투자증권, “방위산업”(산업분석 In-depth), 2015, 15-16쪽 참조.

시기	업체	규모(십억원)	내용
2013	아구스타	1.4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2014	STX그룹	0.15	호위함 조타기 유압펌프에 모조부품 사용
2014	유비애펙	0.18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거액 중개료 횡령
2014	아전상의업체	1.8	군 피복류(아전상의) 납품비리
2015	한국항공우주	2.91	직원이 방위사업 연구용역비 29.1억 횡령 후 잠적

2. 최근의 방위산업비리 적발 및 제재 사례

위에서 개관한 최근의 방산비리 사례들 가운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산비리의 행태를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와 제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개관해보기로 한다. 이 가운데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도 존재하나, 주로 어떠한 형태의 방산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관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

〈표 2-4〉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²⁵⁾

행위자	- 납품업체 회장, 대표이사,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 군기밀 제공 군무원 2명
비리행위	- 1,101억원 규모의 성능미달 장비 납품
수사·기소	- 구속기소 재판 계류, 군기밀 제공 군무원 뇌물수수혐의 재판(군사법원) 계류

25)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31>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나.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표 2-5〉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²⁶⁾

행위자	- 현역 해군대령 및 육군중령
비리행위	-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장과 팀원으로서 2013년 11월 S사 제품이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허위문서 작성하여 납품 - 납품 편의 대가로 금품수수
수사·기소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뇌물수수혐의로 해군 대령 징역3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48만원 선고 - 육군 중령 징역 2년 6월, 벌금 200만원, 추징금 83만원 선고

다. 폭발물장비 납품비리

〈표 2-6〉 폭발물장비 납품비리²⁷⁾

행위자	- 특전사 출신 원사, 대테러장비 납품업자
비리행위	- 특전사 출신 원사는 거짓 납품실적 확인서를 써주고 3200만원 금품수수 - 대테러장비 납품업자는 대당 1억원이 넘는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당 2천만원짜리 저가장비 납품
수사·기소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뇌물수수혐의

라.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

〈표 2-7〉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²⁸⁾

행위자	- 최○○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예비역), 로비스트 함○○
비리행위	-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 -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작성·행사 혐의 무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수사·기소	- 최○○: 징역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 함○○: 징역2년, 추징금 1500만원

26) <http://www.nocutnews.co.kr/news/457256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1/0200000000AKR20160821059600004.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28) <http://news1.kr/articles/?2834587>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마.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²⁹⁾

〈표 2-8〉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

행위자	- 위관급 장교 출신 방사청 6급 직원
비리행위	- 방위사업 관련 브로커에게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정보 전달
수사·기소	-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와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및 영관급 장교 3명 참고인 소환, 군 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

바.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거대한 규모의 “무기도입비리”, 즉 “방산정책비리”를 차치하더라도, 정작 적발되어 수사절차를 거쳐 기소된 방산비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표적 몇 사례만 보더라도 선고되는 징역형은 최고 3년형이며, 병과되는 벌금형과 추징도 기껏 수천만원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정부의 엄벌·근절 선언에도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래에서 고찰하는 방산비리합수단의 대규모 수사과 기소를 통해서조차도 여전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3. 방산비리합수단 수사사례로 본 방산비리

가.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과 역할

1600억원대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넘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고질적 적폐의 하나로 지목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³⁰⁾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4년 11월 21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집결하는 형태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방산비리합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630681&intype=1>(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30) 방산비리와 결부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윤창옥, “한국 방위산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국방과 기술』, 제431호, 2015.1, 18쪽 이하 참조!

수단)을 구성하고 운용에 들어갔다.³¹⁾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과 역할 및 조사 활동의 설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 역할 및 조사 활동의 설계 ³²⁾
- 소속: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 설치 - 규모: 4개 팀, 총 105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 - 검찰: 검사 18명(단장 1명,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포함), 검찰수사관 41명 참여,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46명의 조사인력 참여 - 수사범위: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과 관련된 모든 비리사건(집중 수사) - 대상비리: 방위력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 선정 이전 단계의 비리로서 ①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②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③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④ 민간업체에 채용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하는 민간유착 범행 등에 대해 조사 - 계약업체 선정 이후 단계의 비리로서 ① 계약금액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 허위제출, ②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③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신고필증 위변조, ④ 납품과정 편의 대가 뇌물수수 등에 대해 조사 - 방산비리합수단은 제1팀(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합수단 출범 이전부터 전개한 방산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산비리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나.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 결과

방산비리합수단은 2015년 7월 1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2015년말 활동을 종료하였다. 방산비리합수단이 수사한 대표적 “방산비리사업”은 해군 통영함·소해함 사업,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도입 등이었다. 당시 방산비리합수단이 발표한 방산비리총액은 1조원에 달하였으나, 정확히 말하면 이 총액은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예산 총액이다.³³⁾

방산비리합수단이 수사한 방산비리사업의 육·해·공군별 현황 및 신분별 기소현황

31) 방산비리합수단과 별도로 감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이영하,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출범 배경과 운영”, 『계간 감사』, 2015 봄호, 8쪽 이하 참조!

32) 박학모·김민영·김영규, 『정부 반부패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방안』, 2014, 89쪽 이하를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33)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수사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0460901&intype=1> (최종검색일: 2016년 2016년 11월 30일).

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³⁴⁾ 비리관련 방위사업의 규모면에서는 해군이 8,402억 원으로 가장 크고, 공군 1,344억 원, 육군 133억 원, 방사청 18억 원 순이었다. 기소된 인원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군, 공군, 육군 순이었다.

방산비리사업의 규모 (총액 1조원 ³⁵⁾)	방산비리사업의 규모 (단위: 원)		해군	해상작전헬기 5,890억	
				해군 정보함 도·감청 장비 1,35억	
				차기 고속함 735억	
				소해함 631억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70억	
				통영함 41억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1,101억	
신분별 기소현황 (총77명)	군인(43명)	장성급(11명)	현역1명	예비역 10명	
		영관급(31명)	현역14명	예비역 17명	
		기타(1명)	현역1명	-	
	방사청 공무원(2명)		현역1명	퇴직자 1명	
	기타 공무원(6명)		현역5명	퇴직자 1명	
	일반인(26명)		26명		

다. 방산비리합수단 수사·기소 방산비리범죄

최근의 방산비리 발생 형태들을 살펴보면 방위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로부터 시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뇌물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4)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10207&call_from=naver_news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35) 방산비리합수단 수사대상사업 예산 총액!

〈표 2-9〉 2014/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결과 사법처리 현황(잠정)

사법처리현황		기소내용	
구속기소	47명	뇌물범죄	21명
		문서범죄	25명
불구속기소	16명	기밀침해범죄	7명
		알선범죄	4명
수사 중	41명	재산범죄	23명
		기타	6명

2014/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결과 이루어진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기소죄명별로 살펴보면, 문서범죄 25건, 재산범죄 23건, 뇌물범죄 21건으로 이 세 범죄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밖에는 군사기밀침해범죄(7건)와 알선수재(4건) 등도 있었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의 전형적인 발현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최근의 몇몇 방산비리사례들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발현형태는 뒤에서 검토하게 될 방산비리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위해 제안된 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열거되는 수뢰죄, 제삼자뇌물죄,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의 범죄와 큰 틀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방산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대한 고려 역시 이러한 범죄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제1절 방산비리 예방의 중요성

방산비리가 불거져 이슈화될 때마다 이른바 방산비리대책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 분야 가운데서도 방위력개선사업은 그 방대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부패요인 또한 많이 안고 있다는 인식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을 발족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최근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방산비리는 근절되기는커녕 거의 매년 크고 작은 방산비리가 계속 발생하여 왔으며, 급기야는 ‘방산비리합수단’이 구성되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시 대규모 방산비리가 이슈화되자 2014년 8월 4일 국방부를 비롯하여 방위사업청과 육·해·공군, 국직기관의 군수·시설·감사 관련 부서장들은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회의”를 개최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비리 사전예방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징계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거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³⁶⁾

이러한 인식은 2015년에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도 담겨 있으며, 그 사이 부분적으로 제도의 강화로 나타났으나, 외적인 제도의 변화가 방위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내적 인식의 전환과 규범력의 강화를 가져와 실질적인 방산비리의 억제로 이어

36) http://www.mnd.go.kr/cop/kookbang/kookbangIlboView.do?categoryCode=dema0138&boardSeq=5129&id=mnd_02010600000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질 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제2절 방산비리 예방정책

1. 『2014 국방백서』로 본 방산비리대책

우리나라 국방부는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중순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민 신뢰 제고”와 관련하여 최근 방산비리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체계, 업무 수행의 전문성, 사업정보의 관리, 견제 및 감시시스템” 등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및 부실 원인의 진단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⁷⁾

원가 부정과 사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군이 요구하는 최적 성능의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가 위주의 낙찰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무기체계 소요기획, 획득방법, 시험평가 등 단계별 검증시스템을 보강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능력 중심의 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³⁸⁾

무기체계 획득과정은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³⁹⁾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위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 획득 분야 인력 간 인사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보직경로제를 적용하는 등 업무 수행 전반에서 균형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기밀자료가 많은 방위사업의 특성상 소수의 관계자만이 사업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음성적인 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군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는 보호하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계약 정보의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에 필요한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단계별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개방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⁴⁰⁾ 이를 위해 국방부는 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퇴직직원의 불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뇌물·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37) 『2014 국방백서』, 167-168쪽 참조.

38) 구체적으로 “2014년 2월부터 공인시험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성적서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및 원가정보시스템 확대 등 원가관리

2.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방산비리 대책

정부는 2016년 1월 12일 공공부문 부패근절대책으로 이른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백신’의 컨셉으로 사전에 부패를 방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특히 “방위 산업에서의 비리 발생은 국가안보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이러한 예방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⁴¹⁾

여기서 “4대 백신”은 ①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②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③ 정보 상시 공유·연계 (Information Connecting), ④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Internal Control)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예산누수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의 우선대책을 마련”하였음을 밝혔다.⁴²⁾

이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2016년 6월 1일 “군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부대별·기관별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차원의 「국방부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발족하고 운용에 들어갔다.⁴³⁾

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원가자료 조사제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원가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2014 국방백서』, 199쪽 참조).

39) 계약 관련 사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111200001.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0)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을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서도 추진하고 있다(『2014 국방백서』, 199쪽 참조).

41) <http://www.korea.kr/celebrity/interviewView.do?newsId=148808942>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2)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로 정부3.0 공공개혁 추진”, 2016년 1월 12일.

43)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newsId=I_669&newsSeq=I_9382&command=view&siteId=mnd&id=mnd_02040000000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표 3-1〉 국방부 반부패 청렴 추진단

구분		직위	역할
추진단장		국방부차관	총괄
위 원	국방부 4대 백신 프로젝트 관련 국장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보건복지관	프로젝트 과제 추진 및 점검
	각 군 감찰실장	육군 감찰실장 해군 감찰실장 공군 감찰실장	각 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청렴도 측정 대상 국직기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복지단장	외부청렴도 제고방안 추진
	사정기관장	국방부 감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군기무사 100부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부패감시, 조사, 부패행위 처벌
계		15명	

그러나 기존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청렴대책 및 방산비리대책의 한계
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든 군조직의 폐쇄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위직 군인들
로만 구성된 「국방부 반부패 청렴 추진단」이 과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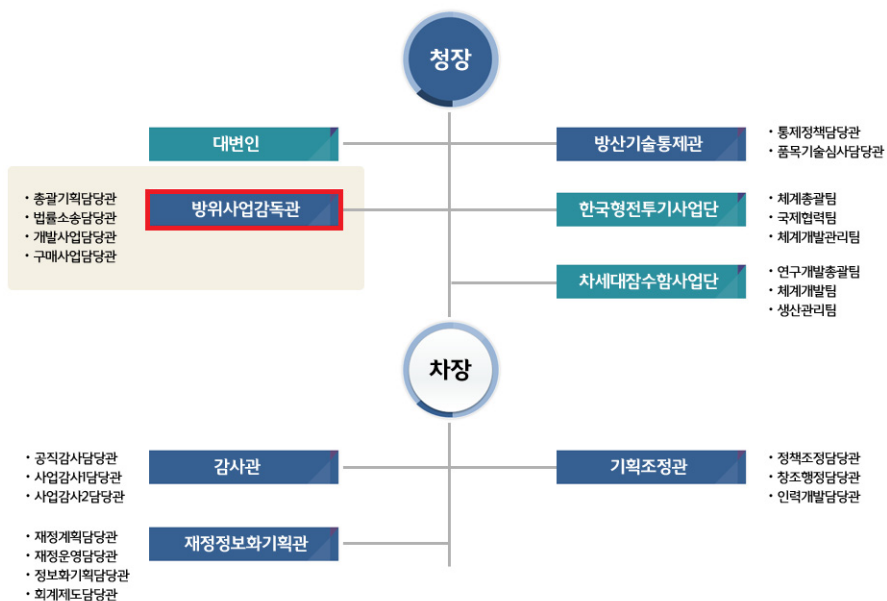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정부는 방산비리가 기종선정부터 성능평가,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효과가 국방전력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실시간 부패감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주요 방위사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가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도입한 제도이다.⁴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사·감사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예방, 법률지원 및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아래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장 직속 국장급부서이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⁴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규칙 제4조)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 3-1] 조직도로 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⁴⁶⁾

방위사업담당관의 임무는 크게 ‘감독’과 ‘사업검증’으로 나뉜다.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는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44) <http://www.fnnews.com/news/201510291411501522>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5)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890호, 2016.3.31., 제정)

46)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Military_Procurement_Legal_Update_201601_kor.pdf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규칙 제2조).

규칙 제10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 사업부서(국)들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칙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은 이러한 법률적 검토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목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의 임무가 방산비리의 사전예방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기존의 감사관 조직은 사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의 충원과 임무의 조정이 이루어졌다.⁴⁷⁾ 방산비리예방차원의 사전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미국국방부의 국방계약감사기구(DCAA) 제도를 참조한 것으로서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정착과 운영이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산비리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조직 구성 초기 방산비리합수단 및 특별수사부 출신 검찰 인력의 파견을 통해 인력이 충원되었는데, 앞으로 전문성의 제고와 보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상설조직으로서 제도화를 이끄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⁴⁸⁾ 그동안 방산비리척결을 모토로 하여 설립된 방위사업청 자체가 “군출신 돌려막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방위사업청 내 군인 및 일반공무원의 비율의 충원을 두고 논란이 된다는 점⁴⁹⁾에서 방위사업청 업무의 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방산비리 극복을 향한 방위사업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7) http://www.mnd.go.kr/cop/kookbang/kookbangIlboView.do?categoryCode=dema0138&boardSeq=10058&id=mnd_02010600000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8)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Military_Procurement_Legal_Update_201601_kor.pdf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9) <http://news1.kr/articles/?270656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 방위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북한의 폐쇄성과 적대적 의존관계에 있는 한국군의 폐쇄성⁵⁰⁾과 방위사업의 폐쇄성이 방산비리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폐쇄성을 배경으로 하여 해외, 특히 미국을 위주로 한 대형 무기 도입과정에서 해외 방산기업과 국내의 이른바 ‘군피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방산비리의 연결고리에 대한 서술을 옮겨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⁵¹⁾

해외 업체는 국내에 지사를 두거나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군 고위장교 출신이 주된 대상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 기밀에 비교적 밝고, 대개 후배들인 현직 장교들 및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무기 소요제기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관여하려고 한다. 문민 권력이라면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주요 무기체계 도입 결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등 ‘군사 권력’에서 결정된다. 이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은 결정 주체라기보다는 구매나 계약을 담당하는 하위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정치권력의 묵인 내지 비호 아래, ‘국제군산복합체 - 군 고위장교 출신의 군피아 - 현존하는 군사 권력’ 사이에 유무형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대형 무기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위협을 핏줄이때로 이용하면서 말이다.

이와 같은 한국군과 방위사업의 폐쇄성을 자양분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국내외 방산업체와 결탁한 ‘군피아’의 호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는 방산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의한 군의 통제가 절실하다.⁵²⁾ “국내외 방산업체와 군피아의 로비, 모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군의 폐쇄성과 독점성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민 권력이 무기획득과정을 통제 관리해야 한다.”⁵³⁾ 이는 한편으로는 ‘군인권센터’의 활약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로써,⁵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의한 통제 강화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⁵⁵⁾

50) 정육식, 앞의 논문, 198쪽 참조!

51) 정육식, 앞의 논문, 203쪽.

52) 같은 취지의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의 지적: <http://news1.kr/articles/?989054>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조선일·배정아,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6.4, 271쪽 이하 참조!

53) 정육식, 앞의 논문, 206쪽.

54) 방위사업청 내부의 방산비리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방위사업청과 방진회(한국방위산업진흥회: 92개 방산업체와 420개 협력업체가 회원사) 사이의 청렴·반부패 선진화를 위한 상호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는 김민욱, “방사청 - 방진회, 청렴문화 확산 협약 체결 - 청렴, 반부패 자발적 참여로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국방과 기술』, 2014, 20쪽 참조!

제3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1. 방산비리범죄 형사소추의 한계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국방비리 또는 방산비리의 영역에서 “전군(前軍)예우”라는 신조어로 변용되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린다김 사건’(백두사업) 및 ‘올곡사업 사건’ 이래 특히 무기중개상이 관여된 방산비리는 대부분 “군대판 전관예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고위직 인사가 전역 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한 후 인맥을 활용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산기업과 이른바 ‘군피아’ 사이의 결탁에 관한 위에서의 서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방산비리는 종종 “현직 군 관계자, 전직 고위 장성, 방산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힌 복마전”의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예비역장교”를 고리로 한 이러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첫째는 방산비리의 적발이 쉽지 않고, 둘째는 적발되어 사건화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드러낸다.⁵⁶⁾ 김동철 국회의원실의 2016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방산비리합수단이 기소한 15건 중 방사청(감사관실)이 인지해 수사의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2.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의 개선

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방산업체 간의 유착의 고리가 강고한 것은 그동안 방위사업비리 신고 실적이 드러낸다. 그동안 포상금이 최고 2천만원이었으나 지난 5년간 지급 실적은 말 그대로 제로(0원)이었기 때문이다.⁵⁸⁾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55)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조사에 따르면 그나마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에서 국방예산에 대한 의회통제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ce & Security,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2015, 5쪽 참조.

5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36566612654168&DCD=A00704&OutLnkChk=Y>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57) 김동철 의원실, 2016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년 9월 29일,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56685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58) <https://www.hankookilbo.com/v/0accb5c881a44d9fb75885bc4c184d3e> (최종검색일:

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5조의3 신설을 통하여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⁵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 신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재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6.1.22.]

그러나 “무기도입에 관여하면 ‘떡고물’이 커서 굳이 비리를 신고할 리 없고, 밖에서는 정보가 차단돼 비리를 알 수 없다며,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고 해서 방산비리가 근절될지 의문”이라는 군관계자의 말처럼⁶⁰⁾ 이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김동철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리자는 엄벌하고, 성과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없앨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⁶¹⁾

2016년 11월 30일).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4호, 2016.1.22.)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신설.

60) <https://www.hankookilbo.com/v/0accb5c881a44d9fb75885bc4c184d3e>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1) 김동철 의원실, 2016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2016년 9월 29일,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56685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법적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형사소추 역량의 강화차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로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의 형태로 ‘방위사업수사부’가 설치된 것을 들 수 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방산비리합수단의 활동 종료에 즈음하여 2015년 말 대검찰청은 앞으로 방산비리를 안정적으로 수사하려면 방산비리합수단에 버금가는 정식직제상의 수사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주관하는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 정식 직제화가 실현되었다.⁶²⁾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여 방산비리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에 대한 형사소추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방위사업수사부는 특별수사 영역을 주로 관장하는 제3차장검사 산하에 설치되었다. 방위사업수사부의 수사는 검찰과 군이 상호 간에 협업 방식과 지휘 체계, 보안 수칙 등을 규정한 합의문을 토대로 하여 협업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⁶³⁾

〈표 3-2〉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및 구성(2016)

역할	방산비리합수단 이후 방산비리 수사 및 공소유지 전담
구성	검찰: 부장검사 1명, 평검사 8명, 검찰 수사관 16명 군: 영관급 군 검찰관 1명과 위관급 군 검찰관 3명 등 13명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최근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롯데와 한 방산업체 대표(예비역 공군 중장) 사이에 거래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의 성격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방위사업부가 이 수사의 전면에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⁶⁴⁾

질 수 있도록 법적 수단과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투명성기구, “국방선진국의 획득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제도 연구”, 2015, 149쪽 참조!

6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4/20161024002523.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9761&ref=A>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4000109>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4. 방산비리사건 재판과 무죄선고의 문제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례없는 대규모 합수단을 구성하여 방산비리에 대한 합동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방산비리가 사건화 되고 방산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던 고위직 장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최근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무죄선고의 원인이 애당초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 자체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미흡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있는지 논란이 된다. 어느 경우이든 결과적으로 방산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가 무산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⁶⁵⁾

〈표 3-3〉 방산비리 주요 피고인 2016년 무죄선고 사례

피고인	사건	재판결과
황○○ 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대법원 무죄 확정
정○○ 전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1심 무죄
	STX 뇌물수수	대법원 뇌물 혐의 파기, 제3자뇌물죄(공소장변경) 파기환송심 진행
예비역 오모 해군대령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확정
예비역 천모 공군중장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240억원)	2심 무죄
무기중개업체S사 전임원	군수품 허위가격	1심 무죄
납품업체S사 대표 등(3)	방탄복 납품비리	1심 무죄

이처럼 빈번한 무죄선고 사례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군 관계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이유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방산비리 수사를 밀어붙여 무죄선고가 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이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고려하지 않고 증거 채택 기준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⁶⁶⁾

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8/0200000000AKR20160818153300022.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7446&code=11131900&cp=nv>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대법원은 2016년 9월 23일 '통영함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황○○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됐던 정○○ 전 해군참모 총장에 대해서도 2016년 8월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⁶⁷⁾ 이들 무죄선고사례는 검찰의 수사·입증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면 애당초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비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제 H사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결재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및 이와 결부된 배임 혐의가 추궁되었다. 그런데 표(황○○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 쟁점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반면, 검사가 주장한 범행동기에 대해 법원은 단순한 가능성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⁸⁾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의욕적으로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본격화된 후 너무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⁶⁹⁾

6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338>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8)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4/20161024002522.html?OutUrl=naver>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6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1000238>. 주간조선은 한국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 기사에서 황○○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폐해의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http://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3&nNewsNumb=002429100006>). 한편 최근 국회 국정 조사에서는 황총장이 세월호참사 당시 통영함 출동명령을 내렸으나 제지당하였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4/02000000000AKR20161214158800001.HTML>) (이상의 기사에 대한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표 3-4〉 황○○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 쟁점별 판결

배임	검찰공소사실	성능이 떨어지는 음파탐지기가 해군에 납품되도록 하여 국고에 약 38억 원의 손해 입힘
	대법원판결	업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없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검찰공소사실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 조작
	대법원판결	공문서 결재 등 업무를 처리하며 치밀함이 부족했다고 하여 허위공문서로 단정 못함
범행 동기	검찰공소사실	상관인 해군참모총장에게 잘 보여 진급하려는 욕심에서 범행
	대법원판결	진급이 범행 동기라는 주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최근 방산비리 규모에 비하여 방산비리 재판 결과가 특히 실망스러운 재판은 이○○ 일광공영회장에 대한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재판이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016년 10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10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군 관계자에게 군 내부자료 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총 징역 3년4월)하였다. 반면 핵심공소사실인 거액의 방산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⁷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이○○ 방산비리” 재판 개요

-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1100억원대 군납품 사기 혐의):**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핵심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 등을 국산화하겠다고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해 정부(방위사업청)를 속여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가량 부풀려 공급대금 9617만달러(약 1101억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
- **재판부의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핵심적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피고인 이○○를 포함한 일광공영 측이 하벨산에 EWTS 장비에 관해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공급대금을 부풀릴 것을 제안했는지와 피고인들이 하벨산과 공모해 방사청을 상대로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 공급가격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선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새로 연구개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지만) “방사청과의 국내 업체 개발참여 조항을 보면 SK C&C 등이 신규 개발해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
- **계열사에 대한 횡령과 군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공여 등 “부수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7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7/2016102701778.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비리합수단이 수사한 사례들을 보면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방산비리가 군수체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는 수사고, 처벌은 별개”라는 식의 귀결에 이른다면 방산비리의 예방과 억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⁷¹⁾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과 기소 및 처벌과 집행을 통한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제4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방산비리범죄의 예방 및 억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도입되었거나 시도된 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의 인지와 소추 및 재판과 판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한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의 선언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방안에 관한 것이다.

방산비리범죄가 연이어 이슈화되면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선언을 한 이후 이러한 “방산비리의 이적죄 단죄론”은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큰 이의 없이 공유되며⁷²⁾ 심지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앞을 다투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계몽주의 형법사상가 베카리아가 세운 명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는 것이다.⁷³⁾ 이러한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에 관한 지식이 방산비리범죄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7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8/02000000000AKR20160818153300022.HTML>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72)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16, 98쪽 참조. http://theminjoo.kr/pledgeDetail.do?nt_id=&bd_seq=52846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73) 한인섭(신역), 『범죄와 형벌』(원저: 체사레 벡카리아), 2013, 106쪽.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계몽주의 법사상가 몽테스키외를 원용하며 중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규범준수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 내지 강도’(Sanktionshöhe)가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Sanktionswahrscheinlichkeit)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가해질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높을수록 규범준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⁷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재의 형사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74) 현재 2004.12.16. 선고 2003헌가12(전원재판부).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제4장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재의 형사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최근 제20대 국회 들어 방산비리범죄의 차단 및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태의 범죄들을 방산비리범죄로 유형화하고, 또 이를 이적죄로 규정하며,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는 시도는 과연 형법과 형벌의 기본원칙에 상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방산비리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검토

1. 방산비리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개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방위산업비리의 척결을 목적으로 제출되어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69, 170)

먼저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호)⁷⁵⁾

7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V6Z0S6N1J0Y1G0Z5P9Y0J2T6D3C4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호)⁷⁶⁾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군용 물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형법 제75조 제2항 및 방위사업법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군용물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수뢰 등의 특정범죄를 범한 경우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징은 제안이유에서는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하여 방산비리범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수사를 원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준용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표 4-1〉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 주요규정

군형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9호)	제75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군용 설비 또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등 군용시설이나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군용물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①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군용 설비 또는 건조물, 기차, 전차,

7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D6A0F6P1G0K1L1E0F7P4L7J1I9V1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의안번호 170호)	자동차, 교량 등 군용시설이나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군용물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

나.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354)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354호)⁷⁷⁾도 앞의 변재일 국회의원의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비리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협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이 범죄들에 대한 기존 규정들의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특별법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법률안 제4조에 따르면 방위산업비리범죄(법률안 제2조 제2호)를 저지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안처분과 유사한 법적 제재를 부가적 처분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제안이유에서는 방산비리범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수사를 원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일반이적죄의 하나로 규정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7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J6X0V6L2P0M1L5G4S3J5N9G5O4F4.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군대의 방위력을 제고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의 방위산업을 말한다.
2. “방위산업비리범죄”라 함은 방위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31조(사문서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방위산업비리범죄)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방위산업비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등 방위산업 관련 기관·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이하 이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관련 기관·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기관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215)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⁷⁸⁾ 역시 방산비리범죄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법상의 수뢰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군형법 제14조 제8호의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의 한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4조의 죄를 범한 사람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라.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086)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6호)⁷⁹⁾은 이 법률의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제2조 제3항에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여

7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K6F0B9Q0K8U0N9D4N9X1P9D0N4A8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7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H6M0M9U0Z2U1O6O4M0A1D0H2B9B0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그 관련범죄에 형법상의 수뢰죄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제3조 제1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4-2〉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처벌 및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 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 연합작전----- ----범죄 및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서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용물 조달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군용물을 획득(「방위사업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획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7장 중 제129조부터 133조까지의 죄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제359조의 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및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1년 이상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형법」 제2편제7장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1. · 2. (생 략)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4.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제359조(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 ----- --.

2. 법률안들의 형사정책적 공통점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일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데서부터 이미 확인된

다. 적을 이롭게 하는 (또는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그 “이적”이라는 결과 관련성을 통해 불법이 근거지어지고,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불법유형적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흡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증하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된 것이다.

3. 법률안의 주요 논점 검토

법률안들에 제안되고 있는 법정형의 가중 방안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논점으로 부각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가. 가중처벌의 실질적 근거로서 방위사업관련성

법정형 가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상 행위들이 가증된 불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지어질 수 있어야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개정안들에서는 불법가증의 요소들로서 방위사업관련성, 군용물관련성, 군인관련성, 이득액관련성 등이 언급된다.

먼저 방위사업관련성은 법정형 가증의 대상인 개별범죄들에 대한 법정형을 가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방위사업관련성⁸⁰⁾은 문제되는 개별 범죄행위, 예를 들어 수뢰행위 또는 배임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정을 의미하지만, 이런 부수적 사정들은 이미 각각 공무원(또는 군인) 또는 사무처리자(및 업무자)와 같은 행위주체

80) 강병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제2215호) 검토보고, 2016. 11., 4쪽 이하는 개정안의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또는 “군수품” 등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강병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제2086호), 2016. 11., 7쪽도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이라는 문언에 대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행위의 방위사업관련성이나 군용물조달관련성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불명확하여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해석을 통한 구체화의 가능성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행위주체의 업무영역이 방위산업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행위영역에서 법정형을 상향시키는 것은 업무영역 사이에 사회적, 법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만, 뇌물죄나 재산범죄에서는 그런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죄들의 불법유형은 각각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또는 재산을 공격하는 범죄에 있으므로, 그 범죄의 행해지는 업무영역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질적인 관점에서 더 큰 불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군용물관련성이나 군인관련성도 법정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뇌물죄나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결과불법이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되는 개별 범죄들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나. 구성요건화 기술로서 관련 범죄구성요건의 열거

개정법률안에서는 법정형가중의 대상이 되는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대상범죄들은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그 공통점이 있지만, 방위산업관련성은 이미 범죄의 정범성을 근거지우는 행위주체의 신분적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달리 동일한 행위주체에 의해 범해질 수 있는 다양한 개별 범죄들⁸¹⁾의 불법유형과 그 불법정도를 상쇄시켜 법정형의 동일성을 근거 지을 수 있는 불법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⁸²⁾ 특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 이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⁸³⁾과 관련해서는 방위산업관련성도 희박하다.

81) 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열거된 범죄 가운데 뇌물공여,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공무원’(‘군인’, ‘군무원’)이 행위주체가 될 여지가 거의 없다.

82) 이런 취지의 강병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제2215호) 검토보고, 2016. 11., 7쪽 참조.

83)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5조 제2항 제2호 참조.

다. 가중된 법정형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불법의 요소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중된 법정형은 소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만 근거지울 수 있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중의 실질적 근거를 범죄구성요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상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수뢰행위 등을 균형법상의 일반이적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⁸⁴⁾은 비례성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방산비리범죄를 일반이적죄로 포섭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의 가중에 충실하려는 일부 법률안의 가중방식의 설득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방위산업비리범죄와 “이적행위”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제출된 법률안들의 공통적 관점은 이런 방위산업비리범죄행위를 일종의 “이적행위”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의 실질적 근거로 원용되고 있다. 이 근거의 타당성은 결국 현행 (일반)이적죄 구성요건의 불법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판단해 볼 수 있다.

1.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개관

범죄로서의 이적행위, 즉 ‘이적죄’는 현재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다. ‘외환의 죄’는 “외국·적국과 협조하거나 외국·적국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화하는 범죄”⁸⁵⁾로서, 그 행위유형으로는 ‘적국’이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형법 제92조 및 제93조), ‘적국’에 일정한 병력, 시설, 물건, 정보 등을 제공하는

84)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

85)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670쪽.

행위(형법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형법 제96조) 및 그 이외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형법 제99조) 등을 포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적죄의 기본구성요건은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이며, 이에 대한 가중구성요건⁸⁶⁾이 형법 제94-98조의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및 간첩죄⁸⁷⁾이다.

형법상 이적죄 개관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86) 배종대, 『형법각론』, 제9판, 2015, 814쪽 및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671쪽.

87) 통설은 간첩죄(제99조)를 독립적 범죄유형으로 파악하나,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와 일반이적죄(제99조) 사이에 위치하는 체계상의 고려로 보나, “적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이적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670쪽)가 타당해 보인다.

2. 이적행위의 불법성

이적죄의 기본구성요건인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이적죄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여기서 이적죄의 구성요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적국’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적행위는 이념유형적으로 보면 적국에 일정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력을 위태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적행위가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객관화되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로 불법유형화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적국을 위하는” 목적으로 주관화되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불법유형화할 수 있다.

군형법 제2편 제2장의 ‘이적의 죄’도 기본적으로 이런 불법유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일반이적’은 제14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제14조)⁸⁸⁾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88) 법률 제14183호, 2016.5.29. [제14조 전문개정 2009.11.2.].

3.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이적 규정의 한계

법률인들의 ‘이적’의 개념은 대체로 제안이유에서 방위산업비리범죄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정형 가중을 상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런 표현은 불법유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형법 제96조나 군형법 제12조의 시설파괴이적 구성요건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면, 방위산업비리를 통해 군의 전투력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적국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위불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군용시설파괴와 달리 법률안들에서 언급된 개별 범죄들은 전형적으로 행위자의 재산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목적, 즉 넓은 의미의 ‘부패’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외환의 죄의 한 유형인 전형적인 ‘이적행위’와는 매우 다른 불법유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적죄가 적국 또는 적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적 안전의 위태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평시에 획득·조달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범죄는 - 현재의 적 또는 적국이 아니라 - 장래의 적 또는 적국을 상정할 때에만 개념적으로 이적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휴전상태로 규정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와 동일한 불법성을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은 형법적 명확성의 원칙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단지 군사적 수사로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군형법 제14조의 일반이적죄가 이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적을 위하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⁹⁾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산비리의 이적죄 포섭은 일반이적죄의 불명확성을 더욱 증폭시켜 이적죄를 희화화할 수 있을 것이다.

89)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671쪽 및 681쪽 참조.

제3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1. 방산비리범죄의 표지로서 “이적” vs “이기”

앞에서 ‘방산비리’라는 용어가 역설적으로 본질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다는 국방연구전문가 출신 김종대 국회의원의 비판을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방산비리는 무기체계에 대한 정책결정 및 무기거래에 관한 “방위정책비리”와 특정장비나 구성품의 품질·가격 등을 조작하는 획득·조달과정의 (좁은 의미의) “방산비리”를 포괄한다. 그런데 기존의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접근법은 이 가운데 전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후자에 대한 책임을 주로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심지어 “이적”이라는 표지까지 동원하는 것도 전자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과장이라는 것이다.⁹⁰⁾

정치적 감시와 책임추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거시적인 “방위정책비리”는 방산비리보다 훨씬 포착과 인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미시적이라 할 수 있는 혐의의 방산비리에 대한 발각과 인지 및 형사소추도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더더욱 적지 않는 장애가 존재함을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 및 재판 현황에 대한 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⁹¹⁾

군사용어로 “원점타격”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점타격” 경고가 복한 도발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⁹²⁾이라는 표현은 방산비리범죄의 예방에도 원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방산비리의 원점, 즉 본질을 겨냥한 예방과 억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반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단죄하려는 시도는 방산비리의 본질에 대한 원점타격이 아니라 원점을 찾지 못하거나 은폐한 채 본질에서 벗어난 상징적 전면전 엄포와 같은 모양새에 그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방산비리범죄에 일반이적죄 내지 이에 준하는 불법성을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앞에

90) 앞의 제2장 제1절 2. 참조!

91) 앞의 제3장 제3절 참조!

92) <http://www.dailynk.com/korean/m/read.php?catId=nk05000&num=90063> (최종검
색일: 2016년 11월 30일).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이른바 “적대형법”⁹³⁾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가운데 어떻게든 이를 일정부분 흡수하는 축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스러운 형사정책적 전략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및 엄벌주의적 형사제재와 결합할 경우 법치국가 형법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적대형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⁹⁴⁾

최근의 법률안들이 이적죄로 단죄하고자 열거한 방산비리범죄의 유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는 전형적인 부패범죄에 속하며 경제범죄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산비리범죄는 “이적”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이기”성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억제 및 반부패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방산비리범죄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형법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결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수단과 장치들이 제대로 투입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론 반부패법의 입법 자체를 보완·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면 이는 방산비리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부패 관련 입법 일반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론?

가.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들의 법정형 가중 방식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들이 방산비리범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살펴보면, 방산비리범죄를 형법 또는 군형법의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법률안들은 법정형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여 3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에 방산비리범죄를 직접 규정하여 일반이적죄로 차단하려는 신상진 국회의원안을 제외하면, 변재일 국회의원안 중 「방위사업법」의

93) “적대형법론”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2012, 93쪽 이하를 참조!

94) 적대형법에 대한 비판은 김일수, 앞의 책, 96쪽 이하 참조!

벌칙규정으로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안이나 민병두 국회의원의 「방산비리 범죄처벌특별법」(안)은 물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칭·개정하려는 주호영 국회의원안까지 대부분이 방산비리 범죄를 단죄함에 있어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및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의 구체적 유형들이 이 특별법들이 가중처벌하는 뇌물범죄 등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변재일 국회의원안은 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하도록 규정(안 제62조의2)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민병두 국회의원안은 경합하는 경우에 이보다 형이 무거운 「특경법」 또는 「특가법」의 적용(안 제3조)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특가법」 제2조 제1항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액에 따라 5년,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방위산업비리범죄로서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안을 적용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도록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주호영 국회의원안은 뇌물 및 수재와 관련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내지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하는 방식을 직접 해당 법률 안에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수뢰액 또는 이익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수뢰액 또는 이익의 금액에 따른 형의 가중기준
1.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의 필요성?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법률안들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및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과의 경합을 염두에 두고 규정하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의 범죄들은 대부분 이미 형법 또는 이 특별법들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이다.

방산비리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가장 종합적인 형사특별법의 형태를 갖추어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으로 칭할 수 있는 민병두 국회의원안, 즉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354호)은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에 준하여 방산비리범죄로 규정되는 범죄의 기본적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한과 상한을 3년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⁹⁵⁾.

이와 동시에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일반형법과 특별형법들 사이에 ① 「형법」, ② 「특경법」 및 「특가법」, ③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으로 나뉘는 방산비리범죄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법정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행 「특경법」 제5조 제4항 내지 「특가법」 제2조 제1항에서 뇌물범죄 및 경제범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이득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액에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산업비리범죄로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도록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비록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과 이에 대한 형사입법자의 엄벌 의지의 표명이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특별법의

95)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제2조 제2호에 두고 있다.

홍수시대⁹⁶⁾로 불리는 현 상황에서 체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가중하는 특별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적이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3. “특가법·특경법시대”의 비상입법에 대한 성찰

재산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범 및 부패사범에 대한 「특가법」 및 「특경법」 적용을 통한 가중처벌은 현행 형법체계상 법정형이 낮은 일반형법의 적용과 대비되며 형사정책적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일반예방의 효과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금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통해 시도되는 입법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위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태동 배경을 복기해 본다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가법」은 5·16 군사쿠데타 후 이른바 ‘국가재건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혁명과업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⁹⁷⁾에 대한 대체입법으로서 1966년 제정되었다.⁹⁸⁾ 당시 한일국교정상화 등에 따른 민족주체성 확립 및 공무원 기강의 확립,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의 근절과 마약 등 국민보건상의 병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한 입법조치였다.⁹⁹⁾ 이에 따라 법 제1조는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경법」은 제5공화국 출범이후 이른바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을 비롯하여 경제범죄와 외화도피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데 비난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비상경제범죄대책입법으로서 제정되었다.¹⁰⁰⁾ 제정이유에서 이 법은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

96)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는 박상기 외, 『형사특별법론』, 2012, 36쪽 이하 참조!

97) 법률 제640호 1961.7.1. 제정.

98) 법률 제1744호, 1966.2.23. 제정.

99) 전지연, 『형사특별법론』(박상기 외), 2012, 188쪽 참조.

100) 손동권, 『형사특별법론』(박상기 외), 2012, 397쪽 참조.

임에도 현행처벌법규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칙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제1조 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¹⁰¹⁾

「특가법」과 「특경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²⁾ 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⁰³⁾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먼저 방산비리범죄를 (일반)이적죄로 단죄하여야 한다는 선언은 각인효과가 큰 “인상적 수사”이기는 하지만 법이론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논거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쿠데타적 정치상황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의문스러운 비상입법으로서 제정된 「특가법」 및 「특경법」이 입법될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방산비리범죄의 엄단을 위해 비상입법이 정당화될 정도의 상황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긍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된다.

4. 소결

방산비리범죄를 「형법」 및 「군형법」의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엄벌하든지, 또는 「특가법」 및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든지, 그 공통점은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실형)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101) 법률 제3693호, 1983.12.31. 제정.

102) 특가법의 위헌성 시비에 대해서는 전지연, 『형사특별법론』(박상기 외), 2012, 195쪽 이하 및 391쪽 이하 참조! 특경법의 위헌성 시비에 대해서는 손동권, 『형사특별법론』(박상기 외), 2012, 447쪽 이하 참조!

103) 전지연, 앞의책, 2012, 391쪽 이하 및 손동권, 앞의책, 2012, 509쪽 이하 참조!

방산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엄벌하려는 것이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응하고자 하는 형사입법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국방과 직결되는 방위산업관련 부패 범죄를 단죄하고 근절하려는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산비리범죄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서 요청되는 정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기존의 「특가법」 및 「특경법」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정치적 악용 시비와 함께 편법 양형의 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물론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마당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비리근절의 분명한 정책의지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방산비리범죄의 “특별한 취급과 관리”의 형사정책은 일정부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일차적 영역은 형사입법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즉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문수사역량의 제고를 통한 형사소추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양형실무에 있어서도 방산비리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뇌물, 횡령, 배임, 문서 등)에 대한 양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기준 개정과정에서 “방산비리관련성”을 해당 범죄의 양형가중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방산비리범죄대책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을 통한 억제를 지향하는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과 같은 입법조치는 방산비리대책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시법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범죄유형과 불법성 등을 검토하여, 형법과 균형법 및 그 밖의 특별형법과의 체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별범죄 구성요건의 설정과 법정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결론

결론

2014년 11월 21일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인 105명의 조사인력으로 구성된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공식 발족되어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1년여의 조사 및 수사 활동 끝에 총 1조원대의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방산비리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비리는 거듭하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뿐 아니라 방산비리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방위산업비리는 전투기와 작전헬기, 함정의 도입에서부터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청탁과 특혜, 뇌물과 재취업 등 비리의 사슬이 끝없이 얹혀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발족, 개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전반에 비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이러한 방산비리는 단지 부패범죄로서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전투력과 국방력의 치명적 약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치명성과 심각성은 특히 적대적 남북대치라는 국가안보적 상황 하에서 심지어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2014년 10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방산비리=이적행위”라는 논의 구조가 지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균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0169호)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0354호)을 발의하여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재취업금지,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단독법으로서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산비리의 적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누적된 가운데 실효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의 요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비리범죄를 과연 형법(군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이적죄로 규정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법현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며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형사처벌규정의 강화·정비라고 하는 단선의 해법으로 견인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비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의 실효적인 정착을 통한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고발의 장려 및 포상의 강화와 고발자 보호 등이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의 영역에서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흠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열거되는 방산비리범죄의 유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

는 전형적인 부패범죄에 속하며 경제범죄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산비리범죄는 “이적”성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이기”성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억제 및 반부패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방산비리범죄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형법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흡결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수단과 장치들이 제대로 투입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론 반부패법의 입법을 보완·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면 이는 방산비리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부패 관련 입법 일반의 문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방산비리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특가법」과 「특경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쿠테타적 정치상황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의문스러운 비상입법으로서 제정된 「특가법」 및 「특경법」이 입법될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법현실이 방산비리범죄의 엄단을 위해 비상입법이 정당화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접근법의 공통점은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실형)이 처해지도록 강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산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을 통한 방위산업관련 부패범죄를 단죄하고 근절하려는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산비리범죄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서 요청되는 정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기존의 「특가법」 및 「특경법」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정치적 악용 시비와 함께 편법 양형의 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방산비리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마당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비리근절의 분명한 정책의지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방산비리범죄의 “특별한 취급과 관리”의 형사정책은 일정부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일차적 영역은 형사입법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즉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문수사역량의 제고를 통한 형사소추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양형실무에 있어서도 방산비리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뇌물, 횡령, 배임, 문서 등)에 대한 양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기준의 개정과정에서 방산비리 관련성을 해당 범죄의 양형가중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방산비리범죄대책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을 통한 억제를 지향하는 「방산비리범죄처벌 특별법」과 같은 입법조치는 방산비리대책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시법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범죄유형과 불법성 등을 검토하여, 형법과 균형법 및 그 밖의 특별형법과의 체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별범죄 구성요건의 설정과 법정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단행본

- 김민욱, “방사청 - 방진회, 청렴문화 확산 협약 체결-청렴, 반부패 자발적 참여로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국방과 기술』, 제422호, 2014.4, 20.
- 김병규,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평가의 理解와 對應”, 『국방과 기술』 제409호, 2013.3,
40-43.
-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 박상기 외,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박영욱 외, 『국방분야 부패 발생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
구소(연구책임자: 박영욱, 공동연구책임자: 권재갑, 이종재, 연구원: 김윤희),
2011.
- 박학모·김민영·김영규, 『정부 반부패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방안』, 국무조정실 정부합
동부패척결추진단, 2014.
- 배종대, 『형법각론』, 제9판, 홍문사, 2015.
- 신치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계간 감사』, 2015 봄호, 14-23.
-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4.
- 윤창욱, “한국 방위산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국방과 기술』, 제431호, 2015.1,
18-21.
- 이영하,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출범 배경과 운영”, 『계간 감사』, 2015 봄호, 8-13.
- 정옥식, “방위산업 비리, 깃털이 아닌 몸통을 봐야 한다”, 『황해문화』, 통권 제86호,
2015.3, 196-206.
- 조선일·배정아,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6.4, 271-296.
- 한국투명성기구, “국방선진국의 획득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제도 연구”,

2015.12.

한국투자증권, “방위산업”(산업분석 In-depth), 2015.10.6.

http://file.mk.co.kr/imss/write/20151006135804_mksvc01_00.pdf (최

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한인섭(신역), 『범죄와 형벌』(원저: 체사레 벡카리아), 박영사, 2013.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ce & Security,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2015.

2. 기관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2016.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정립”, 2007.12.

국방부, 『2014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4.12.3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PBLICTNEBOOK_201506110232492470.pdf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국방부, “국방부 반부패 청렴 추진단 발족- 추진단 구성 및 국방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2016.6.

김동철 의원실, 2016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년 9월 29일,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56685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결과”, 2015. 7.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로 정부3.0 공공개혁 추진”, 2016년 1월 12일.

3. 인터넷 보도자료

검찰, ‘기밀유출 혐의’ 방사청 압수수색, 한국경제, 2016년 11월 16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6306>

- 81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뒷돈 받고 폭발물 장비 납품조작’ 특전사 출신 원사 구속, 연합뉴스, 2016년 8월 2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1/0200000000AKR20160821059600004.HTML>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무기 재활용 사업마저 방산비리…수억원 뒷돈 받은 현직 육군 중령, 중앙일보, 2016년 8월 4일, <http://news.joins.com/article/20402848>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방산비리 또 무죄 선고… 수사 부실? 잣대 엄격?, 국민일보, 2016년 10월 1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7446&code=11131900>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방산비리의 진정한 배후, 투코리아, 2014. 12. 11, <http://2korea.hani.co.kr/324157>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법무법인 세종, 2016년 1월 25일,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Military_Procurement_Legal_Update_201601_kor.pdf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부정부패·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브리핑, 2016년 3월 4일,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10207>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북한 철갑탄에 무방비인 방탄복, 돈 받고 계약해준 軍…장성들은 전용차 타고 휴가·골프, 중앙일보, 2016년 3월 23일, <http://news.joins.com/article/19772875>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으로 부패 차단하겠다, 정책브리핑, 2016년 2월 2일, <http://www.korea.kr/celebrity/interviewView.do?newsId=148808942>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 실탄 빼돌린 예비역 대령, ‘방산업체 뒷돈’ 정황도, 머니투데이, 2016년 3월 28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816220915717>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징역1년 법정구속(종합), 뉴스1, 2016년 11월

- 18일, <http://news1.kr/articles/?2834587>(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론 안 된다] ‘방산비리’ 총액이 1조?...“수사한 사업 전체예산”,
2016년 7월4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0460901>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심서 일부만 실행 선고...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는 무죄,
조선비즈, 2016년 10월 27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7/20161027_01778.html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잠수함 비리’ 前 해군 장교,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6년 11월 29일,
<http://www.fnnews.com/news/201611291310587660>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жат대 엄격했나 부실수사였나...‘방산비리 처벌’ 맥빠진 검찰, 세계일보, 2016년 10월 25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4/20161024002522.html>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전軍예우]인맥 안통하면 재취업으로 유혹...군피아·중개상 ‘검은 커넥션’, 이데일리,
2016년 5월 30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36566612654168>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현역 장교 징역형, 노컷뉴스, 2016년 4월 1일,
<http://www.nocutnews.co.kr/news/4572560>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정부, 중앙지검 산하에 ‘방위사업비리 수사부’ 신설 추진, KBS뉴스, 2016년 11월 11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9761>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 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동아닷컴, 2016년 9월 19일,
<http://news.donga.com/3/all/20160919/80329412/1> (최종검색: 2016년 11월 30일).

Abstract

Research on preventing defense industry corruption and strengthening its criminal punishments

Hark-Mo Daniel, PARK

Defense industry corruption has now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and social issue. It brings about not only wide-spread public anger, but also significantly aggravates public trust in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urthermore, there is rising skepticism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ight not be functioning properly in reducing defense industry corruption offences.

In contrast to other categories of corruption offences, those committed in the defense industry are more serious offences causing critical ripple effects threatening the very foundation of our national security.

Given the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two Koreas, such corruption has also been considered as treason conferring crucial advantages on the adversarial state. As such, several bills aiming at punishing corruption in defense industry as an act of treason were submitted in the 20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such legislative attempts reflecting a nationwide consensus on the needs for severe punishment of defense industry corruption,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it is appropriate, effective, and advisable or not to punish defense industry corruption as treason in the current context of criminal law. Based on such examination, this research also seeks for a reasonable criminal policy designed to prevent and deter defense industry corruption effectively.

In line with a series of reforms aimed at exterminating defense industry corruption, a criminal justice policy administering a zero-tolerance principle seems to be in urgent need. However, these actions and policy belong primarily to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or criminal procedure where defense industry corruption cases ar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Special Act on Defense Industry Corruption Punishment”, directed at deterring corrupt practices through aggravated punishment, could be considered implemented as a last resort in the form of law of temporary duration. Even in this case, however, the types of crime and illegality in the context of the systemicity of the criminal law must be thoroughly examined to provide for reasonable rules and regulations with regards to the composition of the crime and the prescription of punishment.

연구총서 16-AB-11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발	행	일	2016년 12월
발	행	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김진환
등	록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02)575-5282	
홈	페이지	www.kic.re.kr	
정	가	7,000원	
편집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T. 1833-9650
I S B N		979-11-87160-38-0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